

부속서 I
기존의 조치에 대한 유보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 8.9 조제 1 항 및 제 9.6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 다. 제 8.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라. 제 8.8 조(이행요건)
- 마. 제 9.4 조(시장접근), 또는
- 바. 제 9.5 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 8.9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제 3 항에 규정된 대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다. **조치¹**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 8.9 조제 1 항 및 제 9.6 조제 1 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 8.9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8.9 조제 1 항다호 및 제 9.6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9.2 조(내국민 대우), 제 9.3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5 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8 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 9.2 조)와 현지주재(제 9.5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1.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2012 호,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 조(대통령령 제 24616 호, 2013.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3 조(국토교통부령 제 10 호, 2013.6.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782 호, 2013.5.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 조(별표 1)(대통령령 제 24417 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2 조(안전행정부령 제 3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매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1 조(법률 제 11919 호, 2013.7.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 조부터 제 63 조까지, 제 65 조의 2 및 제 65 조의 3(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매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3.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 20 조, 제 44 조, 제 44 조의 2, 제 45 조, 제 45 조의 2 및 제 53 조(법률 제 11929 호, 2013.7.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8 조, 제 83 조, 제 87 조 및 제 111 조(국토교통부령 제 24 호, 2013.9.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 16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정비·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4.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5 조(대통령령 제 24519 호, 2013.4.2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7 조 및 제 7 조의 3(기획재정부령 제 131 호, 2010.3.3) 주세법 제 8 조부터 제 10 조까지(법률 제 11873 호, 2013.6.7) 주세법 시행령 제 9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2-68 호, 2012.10.1)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3-15 호, 2013.4.1)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p> <p>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가 되어야 한다.</p> <p>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p>

5.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아니한다. 또는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6.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법률 제 11860 호,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조(보건복지부령 제 193 호, 2013.4.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 인은 한국에서 1 개의 영업소를 초과하여 개설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분야	의약품 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약사법 제 2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 22 조의 2(대통령령 제 24479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 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 개 이상의 약국을 설치할 수 없고, 회사의 형태 로 약국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9.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 5 조, 제 6 조 및 제 12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철도공사법 제 9 조(법률 제 12025 호, 2013.8.6) 철도건설법 제 8 조(법률 제 12023 호, 2013.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6 조 및 제 38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 7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 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 년 6 월 30 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 년 7 월 1 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p> <p>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 12345 호, 2014.1.28)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10.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1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p> <p>궤도운송법 제 4 조(법률 제 11647 호, 2013.3.22)</p> <p>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 3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당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11.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해운법 제 24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2092 호, 2013.8.13) 해운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19 조, 제 22 조 및 제 23 조 (해양수산부령 제 1 호, 2013.3.24) 도선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선박투자회사법 제 3 조 및 제 31 조(법률 제 11756 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관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기업이어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포함한다.

13.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사용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조치	항공법 제 3 조, 제 6 조 및 제 134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유보내용	투자

항공기 사용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 가. 외국 국민
-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이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항공순찰 및 관측,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그리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를 포함한다.

14.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6 조 및 제 37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73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 주차장법 제 12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도로교통법 제 36 조(법률 제 12045 호, 2013.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제 139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306 조(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 제 24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1933 호,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 조, 제 34 조 및 제 41 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 19 호, 2013.7.11)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442 호, 2013.3.23) 제 3 조에 따라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사업을 인수한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p>

16.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21 조 및 제 87 조(법률 제 12035 호, 2013.8.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 4 조(법률 제 5385 호, 1997.8.28) 전파법 제 13 조 및 제 20 조(법률 제 11712 호, 2013.3.23)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된다.</p> <p>기간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아니한다.</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KT 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이 협정 발효 후 2 년 이내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p> <p>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 와 SK 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p>

-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 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 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구재(제 9.5 조)
조치	<p>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9 조(법률 제 11866 호, 2013.6.4)</p> <p>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대통령령 제 24443 호, 2013.3.23)</p> <p>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7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 조, 제 66 조 및 제 68 조(대통령령 제 23919 호, 2012.6.29)</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 조 및 제 26 조(국토교통부령 제 1 호, 2013.3.23)</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18.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2107 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2 조 및 제 24 조(총리령 제 1016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 및 제 64 조(국토교통부령 제 35 호, 2013.1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법률 제 12091 호, 2013.8.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5 조(법률 제 10524 호, 2011.4.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변호사법 제 4 조, 제 7 조, 제 21 조, 제 34 조, 제 45 조, 제 58 조의 6, 제 58 조의 22 및 제 109 조(법률 제 11825 호, 2013.5.28) 법무사법 제 2 조, 제 3 조 및 제 14 조(법률 제 8920 호, 2008.3.21) 공증인법 제 10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1823 호, 2013.5.28)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그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p> <p>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p> <p>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36 번째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p>

22.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p>공인노무사법 제 5 조, 제 7 조의 2,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법률 제 10321 호, 2010.5.25)</p> <p>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15 조 및 제 19 조(대통령령 제 24447 호, 2013.3.23)</p> <p>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 6 조 및 제 10 조(고용노동부령 제 78 호, 2013.3.23)</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여야 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 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23.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변리사법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의 2 및 제 6 조의 3(법률 제 11962 호, 2013.7.30)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하지 아니한다.</p> <p>변리사 1 인은 1 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p>

24.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법률 제 10866 호, 2011.7.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지 아니한다.</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37 번째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p>

26.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관세사법 제 3 조, 제 7 조 및 제 9 조(법률 제 10570 호, 2011.4.8)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p>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52 조의 4(법률 제 11882 호, 2013.6.12)</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제 19 조의 2 및 제 19 조의 3(대통령령 제 24684 호, 2013.8.6)</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8 조, 제 20 조, 제 21 조 및 제 136 조의 8(고용노동부령 제 86 호, 2013.8.6)</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9.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방송법 제 13 조 및 제 73 조(법률 제 12093 호, 2013.8.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1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4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24632 호, 2013.6.2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되지 아니한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 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30.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 19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1048 호, 2011.9.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제 33 조(대통령령 제 24076 호, 2012.8.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18 조 및 제 36 조(고용노동부령 제 72 호, 2012.12.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1668 호, 2013.3.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대통령령 제 23853 호, 2012.6.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조, 제 4 조 및 제 5 조(고용노동부령 제 64 호, 2012.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선원법 제 109 조, 제 110 조, 제 112 조, 제 115 조, 제 116 조, 제 117 조, 제 142 조 및 제 14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 5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3 년 10 월 29 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32 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공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31.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경비업법 제 3 조 및 제 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령 제 3 조 및 제 4 조(대통령령 제 24419 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3 조(안전행정부령 제 20 호, 2013.10.22)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분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32.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제 137 조, 제 137 조의 2 및 제 138 조(법률 제 12026 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304 조 및 제 305 조(국토교통부령 제 569 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 3 조, 제 4 조, 제 32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2036 호, 2013.8.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 조(대통령령 제 24847 호, 2013.11.20) 사립학교법 제 3 조, 제 5 조, 제 1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1622 호, 2013.1.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 조의 3(대통령령 제 24665 호, 2013.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 1 조 및 제 2 조(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3.23)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최소 50 퍼센트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최소 절반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p> <p>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 의 한국의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p> <p>교육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및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p>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34.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조의 2 및 제 13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3.23) 평생교육법 제 30 조 및 제 33 조부터 제 38 조까지(법률 제 11770 호, 2013.5.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p> <p>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p> <p>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p style="text-align: center;">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 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p>

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35.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8 조, 제 32 조 및 제 3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4 조 및 제 26 조(대통령령 제 24628 호, 2013.6.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14 조 및 제 18 조(고용노동부령 제 57 호, 2012.6.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의사법 제 17 조, 제 22 조의 2, 제 22 조의 4 및 제 22 조의 5(법률 제 11354 호, 2012.2.22) 민법 제 32 조(법률 제 11728 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내 사무소를 설치한 면허 받은 수의사,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수의 또는 수생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7.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 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2 조(법률 제 11915 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 조(법률 제 11713 호, 2013.3.23)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7(법률 제 11464 호, 2012.6.1) 지하수법 제 29 조의 2(법률 제 11803 호, 2013.5.22) 대기환경보전법 제 68 조(법률 제 11750 호, 2013.4.5) 환경영향평가법 제 5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0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법률 제 11965 호, 2013.7.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8 조(대통령령 제 24543 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2 조)
조치	공연법 제 6 조 및 제 7 조(법률 제 11048 호, 2011.9.15) 공연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6 조(대통령령 제 23759 호, 2012.5.1) 공연법 시행규칙 제 4 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 94 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 799 호, 2013.10.1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9.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9 조의 5, 제 16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및 제 10 조(대통령령 제 24183 호, 2012.11.20) 전과법 제 20 조(법률 제 11712 호, 2013.3.23)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p>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 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 22.6 조(문화 산업)의 적용범위와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0.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약사법 제 42 조(법률 제 12074 호, 2013.8.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1 조(총리령 제 1022 호, 2013.3.23)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41.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시장접근(제 9.4 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 12 조(법률 제 11641 호, 2013.3.22) 축산법 제 30 조 및 제 34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종자산업법 제 142 조(법률 제 11704 호, 2013.3.23) 사료관리법 제 6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인삼산업법 제 20 조(법률 제 11690 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7 호, 2013.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2059 호, 2013.8.1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 14 조 및 제 20 조의 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3-29 호 2013.5.16)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p> <p>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 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p> <p>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9.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4 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p>

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2.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¹
조치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7 조(대통령령 제 24697 호, 2013.8.27)</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4638 호, 2013.6.28)</p> <p>외국인투자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02 호, 2013.5.27)</p> <p>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17 호, 2000.9.28)</p> <p>금융투자업규정 제 6-2 조(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3-40 호, 2013.12.4)</p>
유보내용	<p>투자</p> <p>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p>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p> <p>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 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한다.</p>

¹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3.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8.3 조) ²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1535 호, 2012.12.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 11 조(2013.8.9)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²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